

어항지정의 기준(제10조 관련)

	국가어항		지방어항		어촌정주어항		마을공동어항
지정 기준	1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·포구일 것		1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·포구일 것		1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·포구일 것		국가어항, 지방어항,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·포구일 것
	가. 외래어선 이용빈도(연간)	110회 이상	가. 어선 이용빈도(연간)	2,500회 이상	가. 어선 이용빈도(연간)	1,250회 이상	
	나. 어선 이용빈도(연간)	5,000회 이상 2,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	나. 현지어선 수	30척 이상	나. 현지어선 수	10척 이상	
	2.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% 이상을 충족할 것		2.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% 이상을 충족할 것		2.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% 이상을 충족할 것		

※ 비고:

1. 이 표에서 “어선” 이나 그 밖의 선박이란 동력선을 말한다.
2. 이 표에서 “현지어선” 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에 선적을 두고, 지정하려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.
3. 이 표에서 “외래어선” 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, 지정하려는 항을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.
4. 이 표에서 “이용빈도”란 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 제15조 및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적(출·입항을 기준으로 한다)을 말한다.

다.

5. 이 표에서 “어항방문객”은 통신사의 통신데이터 등 통신자료를 활용하여 지정하려는 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.
6. 이 표에서 “주변 양식어장”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기준으로 반경 13km 이내에 소재한 어장의 면적을 말한다.
7. 이 표에서 “도서”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,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내까지는 도서로 본다.
8. 그 밖에 이 표의 관련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(주민등록 인구수 등)나 확인서에 따른다.